

사단법인 우리누리플러스 정관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명 칭)

이 법인은 '사단법인 우리누리플러스'(이하 "법인")라 칭한다

제 2 조 (사무소)

- ① 법인의 주된 사무소는 경기도 수원시에 둔다.
- ② 법인은 필요에 따라 분사무소 및 국내/외에 부설기관을 둘 수 있다.

제 3 조 (목 적)

이 법인은 청소년들이 지역사회 및 국가 더 나아가서는 전 세계에 영향력 있는 청소년으로 자라도록 양육 및 성장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청소년들의 자질과 잠재력을 개발하고, 공동체 내에서의 협동적인 관계를 통하여 전인적인 성장을 도모하며, 청소년들과 비전을 공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 4 조 (사 업)

이 법인은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행한다.

1. 청소년개발사업(특기,적성,진로개발) 및 후원연계사업
2. 청소년개발을 위한 교육(인성,교양,놀이문화,수련활동) 및 사회적응 프로그램
3. 청소년들의 건강증진사업(금연프로그램 등) 및 부모교육사업
4. 비장애,장애청소년 통합교육 및 연구, 지원사업
5. 청소년 국제 교류사업
6. 기타 이 법인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수익사업 포함)

제 2 장 회 원

제 5 조 (회원의 자격, 종류 및 가입)

- ① 이 법인의 회원은 제3조의 목적에 동의하고, 이 법인의 회원으로 가입한 사람을 말한다.
- ② 본회의 회원은 다음과 같이 3종류로 구분한다.
 1. 정 회 원: 청소년기본법에 따른 청소년으로서 이 법인의 회원으로 가입한 청소년
 2. 보통회원: 이 법인의 회원으로 가입한 25세 이상의 자로서 제6조에 따른 의무를 이행한 자

3. 명예회원: 이 법인의 목적에 부합되는 자 또는 이 법인의 발전에 기여하였거나 기여할 수 있는 자로서 이사회의 추천을 받은 자
- ③ 이 법인의 회원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회원 가입신청서를 이 법인에 제출하고, 이사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6 조 (회원의 공통된 권리 및 의무)

- ① 이 법인의 회원은 이 법인이 주최하는 각종 사업, 행사 또는 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
- ② 이 법인의 회원은 이 정관, 제규정 및 총회 및 이사회 의결사항을 준수할 의무를 진다.

제 7 조 (보통회원과 명예회원의 권리 및 의무)

- ① 보통회원과 명예회원은 총회에서 1인 1의결권을 갖는다.
- ② 보통회원과 명예회원은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갖는다.
- ③ 보통회원은 매월 회비 100,000원 이상을 납입하여야 한다. 납입된 회비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 8 조 (회원의 가입, 탈퇴 및 자격 상실)

이 법인의 회원은 탈퇴서를 이 법인에 제출함으로써 언제든지 임의로 탈퇴할 수 있다.

제 9 조 (제 명)

회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이사장은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회원을 제명할 수 있다.

1. 회원으로서 의무를 위반한 경우
2. 이 법인의 명예를 훼손시키거나 이 법인의 목적에 위배된 행위를 한 경우

제 3 장 임 원 및 직 원

제 10 조 (임원의 종류 및 임원 수)

이 법인은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이사장: 1명
2. 이사: 5명 이상 12명 이내 (이사장을 포함)
3. 감사: 2명 이내
4. 고문: 약간명

제 11 조 (임원의 선임)

- ① 이사 및 감사는 보통회원 및 명예회원 중에서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선임한다.
- ② 이사장은 이사 중에서 이사회에서 선출한다.
- ③ 이사와 감사는 이를 겸직 할 수 없다.

제 12 조 (임원의 직무)

- ① 이사장은 이 법인을 대표하고, 이 법인의 업무를 총괄한다.
- ②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이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 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 ③ 감사는 민법 제67조의 직무를 행한다.

제 13 조 (임원의 임기)

- ① 이사장 및 이사의 임기는 3년,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② 임원의 임기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보선하고,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 14 조 (임기 만료 및 직무대행)

- ① 임원의 사임 또는 임기 만료의 경우, 임원은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② 이사장이 유고시에는 이사 중 최연장자인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 15 조 (자격상실에 의한 퇴임)

이사 또는 감사가 회원의 자격을 잃은 때에는 퇴임한 것으로 본다.

제 16 조 (임원의 해임)

임원의 해임에 대하여는 이 정관 제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 17 조 (고 문)

고문은 이사회의 추천에 의하여 이사장이 위촉하고, 이사장은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고문의 자문을 받아야 한다.

제 18 조 (직원 등)

- ① 이 법인은 그 원활한 사무처리를 위하여 사무총장을 둔다. 사무총장은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이사장이 임명한다.
- ② 이 법인은 국제교류부, 기획부, 교육부, 행정부, 사회복지부 및 이사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한 부서를 둔다. 각 부서의 부서장은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이사장이 임명한다.

- ③ 이 법인은 사회복지 전문영역별(아동, 청소년, 장애인, 부량인, 부녀복지, 노인복지 등)로 연구원을 약간명을 둘 수 있다.
- ④ 각 부서의 구성, 업무 및 세부 운영사항은 이사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 ⑤ 직원 등의 임명, 위촉, 복무, 보수 등에 관한 규정은 이사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제 4 장 이 사 회

제 19 조 (이사회 의 소집)

- ① 이사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이사 과반수 이상이 서면으로 요청하는 경우 소집된다. 이사회는 이사장이 소집한다.
- ② 이사장은 이사회 의장이 된다. 이사장 유고시에는 제14조 제2항을 준용한다.
- ③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 회일을 정하고 그 [3]일 이전에 목적을 명시하여 각 이사 및 감사에 대하여 소집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 ④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 20 조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 및 의결한다.

1. 이 법인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2. 총회의 소집과 총회에 상정할 의안 작성
3. 사업계획 및 예산안 작성
4. 재산관리
5. 회원의 제명
6. 각종 규약의 제정과 변경
7. 이 정관 및 총회에서 이사회의 결의사항으로 인정한 사항

제 21 조 (이사회 의결)

- ①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 이상의 참석으로 개최한다.
- ② 이사회의 의결사항은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때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 5 장 총 회

제 22 조 (총회의 종류)

- ① 총회는 보통회원과 명예회원으로 구성된 최고의결기관으로서 정기총회와 임시총회의 2종으로 한다.

- ② 정기총회는 매년 3월에 이 법인의 사무소 소재지에서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소집한다.

제 23 조 (총회의 소집)

- ① 총회는 이사장이 소집한다.
- ②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이사회 결의가 있는 경우
 2. 보통회원과 명예회원의 3분의 1 이상이 목적 사항을 제시하여 총회의 소집을 요청하는 경우
 3. 감사가 목적 사항을 제시하여 총회의 소집을 요청하는 경우
- ③ 총회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 총회일 1주일 전에 그 회의의 목적사항을 기재한 통지서를 각 보통회원과 명예회원에게 발송하여야 한다.
- ④ 총회 의장은 이사장이 된다. 이사장 유고시에는 제14조 제2항을 준용한다.

제 24 조 (총회의 결의방법)

- ① 총회는 총회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한다.
- ② 총회의 의결은 민법 또는 이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출석한 총회 구성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이를 결정한다.

제 25 조 (서면에 의한 결의)

부득이 한 사유로 인하여 회의에 출석할 수 없는 회원 또는 임원은 사전에 통지된 사항에 한하여 서면으로 결의할 수 있다.

제 26 조 (총회에 부의할 사항)

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정관의 변경
2. 기본재산의 취득과 처분
3. 본 법인의 기본활동 방침 결정
4. 임원의 선출 및 해임
5. 전년도 활동보고 및 결산안 승인
6. 신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심의 확정
7. 감사보고서의 승인
8. 회원의 회비 및 차입금 최고한도액 결정
9. 기타 중요한 사항

제 27 조 (총회 의결 제척사유)

의장 또는 회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 취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 등 회원 자신과 법인과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제 28 조 (총회의 의사록)

- ① 총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경과, 요령 및 결과를 기재하고 의장 및 출석한 이사가 기명 날인하여야 한다.
- ③ 이사는 의사록을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 6 장 재산 및 회계

제 29 조 (재산의 종류)

- ① 이 법인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의 2종으로 한다.
-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산은 기본재산으로 한다.
 1. 별지 재산 목록 중 기본재산으로 기재된 재산
 2. 기본재산으로 지정하여 출연된 재산
 3.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할 것을 결의한 재산
- ③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을 이를 보통재산으로 한다.
- ④ 기본재산의 변경에 관하여는 정관변경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 30 조 (재산의 관리)

- ① 기본재산은 매도, 증여, 임대, 교환하거나 담보에 제공하거나 의무부담 또는 권리의 포기를 할 수 없다. 기본재산이 감소하는 경우에는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② 이 법인의 재산 중에서 현금은 이사회 결의에 의해 지정된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보관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를 제외하고 이 법인의 재산의 유지, 보존 및 기타 관리에 관하여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이를 정한다.

제 31 조 (재정)

이 법인의 재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구성한다.

1. 회비
2. 기본재산에서 나오는 수입금
3. 후원 및 기부금
4. 기타 수입금

제 32 조 (회계연도)

이 법인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에 시작하여 12월 31일에 끝난다.

제 33 조 (사업계획, 예산 및 결산)

- ① 이 법인의 연도별 사업계획 및 예산안은 회계연도 개시 전에 이사회 결의를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② 연도별 결산은 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연도 말 현재의 재산목록과 함께 감사의 감사를 받아야 하며, 감사보고서, 업무현황 및 재산목록을 첨부하여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의 총회 승인사항은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④ 후원사업과 관련된 연간 기부금 모금액과 활용실적은 홈페이지를 통해 다음해 3월말까지 공개하여야 한다.

제 34 조 (잉여금의 처분)

회계연도 말에 잉여금이 생겼을 때에는 이사회 결의에 따라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기본재산으로 하거나 또는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시킨다.

제 35 조 (회계의 구분)

이 법인은 수익 사업을 이행하기 위하여 또는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필요할 때는 총회 결의에 의하여 특별 회계를 둘 수 있다.

제 36 조 (수익금의 사용)

전조의 특별 회계에서 생긴 수익 또는 잉여금은 이사회 결의로써 기본재산 또는 보통재산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 7 장 정관의 변경 및 잔여재산

제 37 조 (정관의 변경)

이 정관은 총회에서 총회 구성원의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얻어 주무관청의 허가를 득한 후 주무관청의 감독 하에 이를 변경할 수 있다.

제 38 조 (해 산)

이 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총회 구성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 39 조 (잔여 재산의 처분)

이 법인이 해산할 때의 잔여 재산은 총회의 결의를 거쳐 주무 관청의 허가를 받은 후 주무관청의 감독하에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이 법인과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 귀속하도록 한다.

보 칙

제 1 조 (시행일)

이 정관은 법인 설립 등기일로부터 시행한다.

서기	1997년	3월	1일	제정
서기	2005년	5월	24일	개정
서기	2008년	6월	29일	개정
서기	2009년	6월	21일	개정
서기	2014년	4월	1일	개정
서기	2016년	4월	1일	개정
서기	2017년	7월	11일	개정
서기	2026년	1월	19일	개정

사단법인우리누리플러스

이사 김덕현